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1. 개정 이유

근로능력평가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는 한편 의학적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활동능력평가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근로능력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근로능력평가 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함(제4조)

나. 근로능력 평가대상자가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의사는 또한 한의사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함(제5조)

다.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연금 공단에 근로능력 평가를 의뢰함(제6조)

라. 국민연금공단은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평가 등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함(제7조부터 제10조)

마.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

력판정을 실시함(제11조)

바.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14조)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근로능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에 대한 정밀한 심의와 근로능력판정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15조)

아. 의학적 평가 대상은 11개 질환으로 하고, 활동능력 평가항목은 체력, 만성적 증상 등 15개 항목으로 함(별표 1,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2012.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4호, 2010.12.29.)”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학적 평가”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검토하여 별표 1의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질환별로 단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활동능력 평가”란 공단이 평가대상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별표 2의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능력 간이평가”란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중요한 항목 3개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의학적 평가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이란 제1호의 의학적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공단에서 위촉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말한다.

제4조(평가 신청) ①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평가대상자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에 근로능력평가 결과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상태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당해연도의 의학적 평가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상태의 확인 등 평가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자가 2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등) 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는 별표 1의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외에 자신이 진료한 것에 대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 관련서류의 발급을 요구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평가 의뢰) 제4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재산 확인이 끝나는 대로 공단에 근로능력 유무를 관정하기 위

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능력평가) ① 근로능력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학적 평가
2. 활동능력 평가

② 공단은 근로능력평가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2회 이상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가 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공단은 근로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정신보건센터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공단은 근로능력평가가 공단에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제8조(의학적 평가) ① 의학적 평가는 제출된 관련서류에 의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의학적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진단을 하

게 할 수 있다.

③ 의학적 평가 시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상태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1년 뒤에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에 한하여 의학적 평가를 면제한다.

④ 의학적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의학적 평가 지문) ① 공단은 제8조에 따른 의학적 평가 시 지문 위원의 의학적 지문을 받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의학적 평가 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학적 평가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의학적 평가 단계 결정을 하기 어려워 정밀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

2. 질병의 특성,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및 복합질환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

3.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의학적 평가와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학적 평가 지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10조(활동능력 평가) ① 활동능력 평가는 평가대상자에 대한 면접평가, 관찰평가 및 상행평가 등을 통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평가, 관찰평가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는 등 활동능력 평가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가 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④ 활동능력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근로능력의 판정 및 통지)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근로능력판정을 실시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능력 없음

가. 의학적 평가 결과가 제4단계인 경우

나. 활동능력 간이평가 결과가 3점 이하인 경우

다. 의학적 평가 결과가 3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52점 이하

인 경우

라. 의학적 평가 결과가 2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44점 이하

인 경우

마.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36점 이하인 경우

2. 근로능력 있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 의뢰가 반려된 경우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청 결과를 근로능력 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평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근로능력 판정의 유효기간등) ① 제11조에 따른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간은 관청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의학적 평가 결과가 4단계이고,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상태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청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청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등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근로능력판정 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하고 수급자의 판정상태가 변화되어 판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시 근로능력판정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능력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능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능력평가 및 판정의 조정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판정 신청) ① 제11조의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근로능력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과 관련된 질병의 내용이 포함된 진료기록부 사본
2. 기타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정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판정 신청서와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5조에 따라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평가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근로능력 평가를 실시했던 공단의 직원 및 자문위원은 재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 재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제15조(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근로능력평가 결과 및 제14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대한 청밀한 심의와 제13조에 따른 근로능력판정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에 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이하 “판정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판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와 달리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급자의 판정상태가 변화되어 판정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판정과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판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근로능력판정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판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의료전문가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판정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판정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판정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근로능력평가기준 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변경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된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는 이 고시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144호, 2012.8.2) 부칙 단서 시행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144호, 2012.8.2) 부칙 단서의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학적 평가기준(제8조 제4항 관련)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평가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다.

- 1) 근골격계 2) 신경기능계 3) 정신신경계 4) 감각기능계
- 5) 심혈관계 6) 호흡기계 7) 소화기계 8) 비노생식계
- 9) 내분비계 10) 혈액 및 중앙질환계 11) 피부질환계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기준

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

- 1)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제2장의 질환별 평가기준에 따라 진단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2) 평가대상 질환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

평가대상 질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
정신신경계	○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가 발급 가능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노생식계 내분비계 혈액 및 중앙질환계 피부질환계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작성 기준

- 1) 만성질환은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정신신경계 질환은 3개월 이상 중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 2) 만성질환 및 정신신경계 질환을 제외하고는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없는 경우라도 소견서 첨부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함
 - 가)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진료기록이 있었던 경우
 - 나)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더 이상의 치료에도 상태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 다. 질병·부상 고착 평가 기준

1) 고착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의학적 상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 또는 부상의 특성, 중증도, 치료경과, 치료의 종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근골격계질환의 진단 및 척추 상병, 신경기능계의 척추상병 및 기질적 뇌손상, 감각기능계의 청각, 소화기계질환의 장루, 비뇨생식계질환의 요루, 피부질환계의 결손질환 및 각 질환에서 장기를 이식한 경우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의 고착 여부를 판단한다.

라. 진단서 유효기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진단을 받은 날부터 2개월로 한다.

마.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평가대상 질병에 대한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평가방법

가. 평가대상 질환별 단계결정은 제2장의 질환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다만, 다음의 평가대상 질환 내의 질병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 1) 근골격계 질환 <상·하지> 및 <척추>
- 2) 감각기능계 질환 <청각>, <평형> 및 <시각>
- 3) 소화기계 질환 <간질환> 및 <위장질환>

4) 피부계 질환 <피부질환> 및 <외모 및 결손질환>

다. 각기 다른 평가대상 질환별 질병이 2종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2개의 질병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한다.

라. 질병이 11개 평가대상 질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이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쳐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 평가기준을 기초로 해당 질병이나 환자의 상태와 가장 근접한 평가대상 질환 중 한 개를 선택하여 그 단계를 평가할 수 있다.

단계	평가 기준
1단계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상태가 존재하는 경우로 치료에 잘 반응이 되는 경우
2단계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3단계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치료에도 근로능력 수행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
4단계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치료에도 근로능력 수행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경우

라. 평가대상 질병이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약하여 제2장의 질환별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계외”로 평가한다.

마. 평가대상 질환에 대한 평가표에 따른 단계평가 외에도 평가대상자의 질병이나 장애의 고착 여부를 평가한다.

5. 평가 결과 합산

2종류의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의학적 평가결과는 2종류의 질병 중 단계가 높은 질병의 단계보다 1단계 위로 평가한다.

용하고 도수근력검사를 통해 평가한다. 운동마비 검사는 방사선 검사나 근전도검사 소견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없는 경우 도수근력검사를 통해 평가한다.

- 최추골절은 최종상태의 압박율로 측정한다.
- 운동관절부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상지 : 전관절부, 주관절부, 완관절부
- 하지 : 고관절부, 슬관절부, 족관절부

○ 평가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최추장애인 등급	1주간 이하 고경솔	지체최추장애 6급 수준	지체최추장애 5급 수준	지체최추장애 4급 수준
최추 골절	25% 미만 압박골절	25~50% 압박골절	50% 초과 압박골절	
최추 전환	아물치료 중이며 최추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있음	최추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하나의 관절부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근력 등급 4)	최추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하나의 관절부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근력 등급 3)	최추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둘이상 혹은 양측성으로 관절부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근력등급 3 미만)

* 근력평가방법

- 근력등급 0(不用) : 근육수축이 불가능
- 근력등급 1(重症) : 약간의 근육수축은 가능하나 관절운동은 불가능
- 근력등급 2(無力) : 중력은 이겨내지 못하지만 수평적 관절 움직임은 가능
- 근력등급 3(中症) : 중력은 이겨내지만 약한 힘에도 저항하지 못함
- 근력등급 4(輕症) : 중력과 약한 힘에 대해 이겨내어 움직일 수 있음
- 근력등급 5(正筋) : 강한 힘에 대해 충분히 이겨내어 움직일 수 있음

2. 한의사용

- 진단서 발급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한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상·하지>

- 해당 질병
- 사지골의 절단, 골절, 변형 및 기능장애가 있는 근골격계 질병

○ 평가방법

- 근골격에 대한 한의학적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신체검사와 증후학적 평가를 위주로 한다.
-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질의 절단, 골절의 병력, 관절의 가동범위로 평가한다.
- 상지의 경우 견, 주, 완, 지관절을, 하지의 경우 고, 슬, 족관절 등의 관절운동범위와 통증 유무, 결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통증의 평가는 통증의 부위와 진찰 시 압통이 있는 관절 부위를 확인하고 통증의 종류와 강도를 구분하여 평가(예, 자통, 둔통, 작열통, 간헐통, 마비통 등)와 경통, 중등도통, 중등 등)하며, 사지 중에 절단이나 절원 및 기타 이유로 결손이 있는지 확인한다.
- 골절 등의 치료를 위하여 1개월 이상 고경으로 일상생활이 제한될 경우 4단계로 결정하며, 원인 질병 치료 시 다시 평가한다.
- 절단, 변형, 골절 등에 의한 운동신경마비는 신경기능계절원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 평가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절단	-제2수지 근위지 관절 이상 절단 -제3,4,5수지 중 2개 이상 절단	-제1수지 지관절 이상 절단 -제2수지 포함하여 2개의 수지 근위지 관절 이상 절단	-한 손의 제1수지 지관절 이상 절단되고 1개 손의 근위지관절 이상 절단되고 1수지 이상 절단	-양 손의 제1수지 지관절 이상 절단되고 1수지 이상 절단되고 2수지 이상 절단되고
상지				

○ 평가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최추장애 인등급	17간 이하 고정술	지체최추장애 수준	지체최추장애 수준	지체최추장애 수준
최추 골절	25% 미만 압박골절	25~50% 압박골절	50% 초과 압박골절	
최추 질환	침구치료 및 한방 물리요법 혹은 한 약치료 시행 중	이학적 검사상 최추신경병증의 소견이 있음(근력등급 4)	이학적 검사상 최추신경병증의 소견이 있고, 근력약화 소견이 있음(근력등급 3)	이학적 검사상 최추신경병증의 소견이 있고, 근력약화 소견이 있음(근력등급 3 미만)

* 근력 평가방법

- 근력등급 0(不用) : 근육수축이 불가능
- 근력등급 1(重症) : 약간의 근육수축은 가능하나 관절운동은 불가능
- 근력등급 2(無力) : 중력은 이겨내지 못하지만 수평적 관절 움직임을 가능
- 근력등급 3(中症) : 중력은 이겨내지만 약한 힘에도 저항하지 못함
- 근력등급 4(輕症) : 중력과 약한 힘에 대해 이겨내어 움직일 수 있음
- 근력등급 5(正常) : 강한 힘에 대해 충분히 이겨내어 움직일 수 있음

2 신경기능계 질환

1. 의사용

- 진단서 발급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해당 질병

- 뇌졸중이나 뇌손상, 뇌신경손상, 척수병변, 척수 손상, 뇌종양 등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질환 및 근육병, 말초신경병증 등 신경기능계와 관련된 질병

○ 평가방법

- 신경계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지의 기능장애 소견으로 일상생활동작이나 기립 및 보행의 제한정도
- 경련발작 정도, 안면마비 정도
- 상지의 일상생활동작 : 식사, 세면, 양치질, 용변처리, 물건 옮기기, 목욕하기, 옷 입기 등
- 상지의 미세한 동작 : 글씨쓰기, 칫가락 사용, 단추 끼우기, 컵 쥐기, 지퍼열고 닫기, 지폐세기 등
- 기립 및 보행기능 : 일어서기, 기립자세 유지하기, 눈감고 서기, 계단 오르기, 계단 내려가기, 고르지 못한 길 걷기, 언덕길 걷기 등으로 평가한다.
- 기립, 보행의 제한 : 보행 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오르내리기에 불안정성이 보이는 경우
- 기립, 보행의 중증도의 제한 : 평지는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기에 제한, 계단오르내리기지 보조기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 기립, 보행의 고도의 제한 : 평지 보행 시에도 보조기의 사용이 필요하며 계단이나 언덕길 등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가. 상지 : 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일상동작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하지 : 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다. 약물조절이 되는 간질발작, 후각 상실, 한쪽 경도의 안면마비

2단계	가. 상지 :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제한을 보며,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나. 하지 : 보행시 경도의 파행을 보이는 경우 다. 약물조절이 되나 간질발작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라. 한쪽 중증도의 안면마비
3단계	가. 상지 :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며,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나. 하지 : 보행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조금 불안한 경우 다. 한쪽 완전 안면마비
4단계	가. 상지 :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며,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매우 어려운 경우 나. 하지 : 평지보행은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걸음 걸기 어려운 경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안정성이 떨어져 넘어지기 쉬운 경우 다. 약물치료중이나 예측되지 않는 간헐적 경련발작(월 1회 이상) 라. 양쪽 완전 안면마비

2. 한의사용

- 진단서 발급
 - 진단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진료했던 한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해당 질병
 - 뇌졸중이나 뇌손상, 뇌신경손상, 척수병변, 척수 손상, 뇌종양 등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질환 및 근육병, 말초신경병증 등 신경기능계와 관련된 질병
- 평가방법
 - 신경계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지의 기능장애 소견으로 일상생활동작이나 기립 및 보행의 제한정도
 - 경련발작 정도, 안면마비 정도
 - 상지의 일상생활동작 : 식사, 세면, 양치질, 용변처리, 물건 옮기기, 목욕하기, 옷 입기 등
 - 상지의 미세한 동작 : 글씨쓰기, 컷가락 사용, 단추 끼우기, 컵 쥐기, 지퍼열고 닫기, 지폐세기 등
 - 기립 및 보행기능 : 일어서기, 기립자세 유지하기, 눈감고 서기, 계단 오르내리기, 계단 내려가기, 고르지 못한 걸 걷기, 언덕길 걷기 등으로 평가한다.

- 기립, 보행의 경도의 제한 ; 보행 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오르내리기에 불안정성이 보이는 경우
- 기립, 보행의 중증도의 제한 ; 평지는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걸음 걸기에 제한, 계단오르내리키시 보조기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 기립, 보행의 고도의 제한 ; 평지 보행 시에도 보조기의 사용이 필요하며 계단이나 언덕길 등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평가표

단계	상대 기준
1단계	가. 상지 :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제한을 보며,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나. 하지 : 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다. 의과치료 병행 혹은 한의과 단독치료로 조절되는 간질발작, 후각 상실, 한쪽 경도의 안면마비
2단계	가. 상지 :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제한을 보며,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나. 하지 : 보행시 경도의 파행을 보이는 경우 다. 의과치료 병행 혹은 한의과 단독치료로 간질발작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라. 한쪽 중증도의 안면마비
3단계	가. 상지 :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며,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나. 하지 : 보행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조금 불안한 경우 다. 한쪽 완전 안면마비
4단계	가. 상지 :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며,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매우 어려운 경우 나. 하지 : 평지보행은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걸음 걸기 어려운 경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안정성이 떨어져 넘어지기 쉬운 경우 다. 의과치료 병행 혹은 한의과 단독치료 중이나 예측되지 않는 간헐적 경련발작(월 1회 이상) 라. 양쪽 완전 안면마비

3 정신신경계 질환

○ 평가표

단계	상대 기준
1단계	-해당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 없으나 증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지 치료와 안정가치가 필요한 경우
2단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치가 필요한 경우
3단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치가 필요한 경우 -F20~F29, F00~03, F06~09 이외의 진단인 경우 과거 6개월 이내에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입원이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증상이 진료기록 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평가 당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증정도 이상의 증상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4단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유지치료와 안정가치가 필요한 경우 -F20~F29, F00~03, F06~09 이외의 진단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자해(자살) 및 타해 등의 심한 증상이 명백히 관찰되거나, 평가 당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심각한 증상이 유지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일상생활의 수행: 청결 유지, 가족관계 유지, 약물 복용, 간단한 물건사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

○ 진단서 발급(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일반의사가 발급 가능

○ 해당 질환

-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F20~F29), 양극성 장애(F31), 우울장애 중 증증 심화(F32.2, F32.3, F33.2, F33.3), ICD-10 기준에 부합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F43.1), 강박장애(F42), 뇌영상 자료 등으로 기질적 손상이 확인되는 정신 및 행동장애를 동반하는 뇌손상 후유장애(F00~F03, F06~F09), 의식소실이나 기질성 기억장애 등이 병력으로 확인되는 뇌진탕후 증후군(F07.2) 등

- 다만, 알코올을 포함한 중독장애의 경우 증상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1단계로만 평가하며, 중독장애가 있을 경우 중독장애는 다른 장애와 합산하지 않음

○ 배제 질환

- 인격장애

○ 평가방법

- 평가전에 정신평적으로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평가를 시행함. 단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시급한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임.
- 기타 중독 장애와 중독 장애의 경우 1개월 이상 약물 중단이 확인되는 경우에 진단하며 그렇지 않거나 성격장애가 동반된 경우 1단계 차감함.
- 알코올 등 중독장애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정신병적 증상 또는 기억력 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 그에 따라 2단계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음.

4 김각기능계 질환(청각, 평형, 시각)

○ 진단서 발급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청각>

○ 해당 질병

- 감각신경성 난청, 전음성 난청, 혼합성 난청, 중추성 난청

○ 평가방법

- 순음청력검사,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한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인 경우
2단계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인 경우
3단계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4단계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평형>

○ 해당 질병

- 현기증 : 수평면에서 본인이 회전하는 느낌 또는 본인에 대해 사물이 회전하는 느낌을 말한다.

- 어지럼 또는 몽롱함 : 움직이는 느낌이 없다는 점에서 현기증과는 구분된다. 현기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자세 안정 또는 기립 평형 이상

○ 평가방법

- 온도안진 검사, 회전외자검사, 사지구간의 평형검사(equilibrium test, deviation test), 직립반사검사(righting reflex test), 전기안진기록법

(Electronystagmography), 체위검사(Posturography)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평형·전정 감각장애의 증상 및 징후가 있는 경우
2단계	-일측 평형·전정기능 감소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일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음) 복잡한 활동 또는 엄격한 주의가 요구되는 특정업무나 활동만 불가능한 경우
3단계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전정기능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음)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경우
4단계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전정기능 감소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임상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음)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경우

<시각>

○ 해당 질병

- 시력 저하와 시야 결손을 일으키는 질환과 마비 또는 제한성 안구운동장애로 인한 비공동성 사시가 속하며 이 질환들의 상태는 영구적이고 비가역적이면서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 다만 수술 또는 약물 치료 등으로 호전이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하나 건강상태 등으로 수술이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를 명시하고 잠정적인 평가를 한다.

○ 평가방법

- 시각(시력, 시야, 안구운동)의 이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병력, 안구와 시각계의 현 상태, 관련 해부학적 이상소견의 기록이 필요하다. 두 눈 각각의 원거리시력 측정 및 굴절교정검사에 따른 최대교정시력 측정과 시야검사가 필수적이다.

- 표준문자 시력표를 이용한 시력 측정과 시야와 안구운동검사를 위한 표준화된 장비 및 검사방법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따른다.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 해당 없음
2단계	- 나쁜 논 의 지적이 0.02이하인 경우
3단계	- 좋은 논 의 지적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논 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
4단계	- 좋은 논 의 지적이 0.1 이하인 경우 - 두 논 의 시야각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경우

5

심혈관계 질환

- 진단서 발급
 - 진단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해당 질병
 - 심부전, 심근허혈, 심장 수술한 경우, 심혈관 계통의 질병 등
- 평가방법
 - 질병의 급·만성 여부,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6분간 운동부하 검사 상 건는 정도, 심초음파에서 심장기능 정도, 전신 증상여부, 질병 중증도에 따른 일상 활동의 제약정도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 심혈관 질환이 의심 되는 경우 - 심혈관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 심혈관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인 경우 - 고혈압이 있으나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
2단계	- 심혈관 질환이 진단되었으나 증상은 거의 없는 경우 - 고혈압 외의 심혈관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약물부용이 요하나, 일상 사회생활이 가능하며, 부작용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약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 - 고혈압이 있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
3단계	- 심혈관 질환이 치료되었으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심혈관을 지니고 그 때문에 신체활동이 가벼운 정도로 제한되는 환자. 안정시에는 무증상인데, 보통이상의 신체활동에서는 피로, 동계, 호흡곤란, 또는 협심통이 있어, 운동부하검사와 심초음파로 심장기능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진행성 심혈관질환으로 판단되어, 주기적인 정밀 검사(운동부하검사 및 심초음파 검사, 혈관 검사나 방사선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약물치료 중인 질환으로 안정적 치료가 되지 않고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심장이식을 받은 상태
4단계	- 심혈관을 지니고 그 때문에 신체활동이 고도로 제한되는 환자. 안정시에는 무증상인데 가벼운 일상생활의 신체활동에서 피로, 동계, 호흡곤란, 또는 협심통이 있거나 심초음파에서 심장기능이 40%이하인 경우 - 심장이식을 받은 상태이나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

6 호흡기계 질환

- 진단서 발급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해당 질병
 - 천식, 만성 폐색성 폐질환, 체형성 만성 폐질환 부류
- 평가방법
 - 질병의 급·만성도,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폐환기 기능, 호흡곤란정도, 동맥혈 산소 분압,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일상 활동의 제약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호흡기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호흡기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호흡기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인 경우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하였고, 현재 안정적인 경우
2단계	-폐나 기관지 관련 질환으로 진단 받았으나, 운동 시에도 호흡곤란 증상이 경미한 경우 -폐나 기관지 질환으로 간헐적으로 약물복용이 필요한 경우 -습한 곳이나 연기 등이 있는 곳에서 이동시 약간의 호흡곤란을 느끼는 경우
3단계	-폐나 기관지 관련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은 없으나 경사진 길을 오르거나 빨리 걸으면 호흡곤란을 느끼며 평상시의 1초간 강제호기량이 50%이상 60%미만인 경우 -진행성 폐나 호흡기 만성 질환으로 주기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폐나 기관지 관련 질환으로 지속적인 약물부용 치료 유지가 필요하며 치료 중단시 질병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폐나 기관지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폐이식을 받은 상태
4단계	-폐나 기관지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옥외 노동일을 하면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1초간 강제호기량이 50%미만인 경우 -폐이식을 받은 상태이나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

7 소화기계 질환

- 진단서 발급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간질환(담·췌장질환 포함)>

- 해당 질병
 - 만성 간질환(담·췌장질환 포함)

- 평가방법
 - 간성뇌증, 간신증후군, 복수 등을 고려해서 평가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만성간질환(만성간염, 간경변증 등)으로 진단을 받아 주기적 관찰을 요하는 경우
2단계	지속적인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주기적인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 · 간성뇌증 · 지방성세균성 부막염 ·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 복수
3단계	-간이식을 받은 상태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아태 증상이 1년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 간성뇌증 · 자발성세균성 부막염 ·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 복수
4단계	-간이식을 받은 상태이나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

<위장질환>

- 해당 질병
 - 상부, 하부 위장관 질병

○ 평가방법

- 증상, 수술 및 입원 치료 필요성에 따라 구분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동증, 출혈, 설사 등)이 있지만 수술후 회복하였거나 약물치료로 잘 조절되는 경우
2단계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동증, 출혈, 설사 등)이 있어, 지속적으로 외래 방문치료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3단계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동증, 출혈, 설사 등)으로 간헐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질환이나 산상으로 1회 이상 수술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4단계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동증, 출혈, 설사 등)이 있고, 약물이나 수술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완화나 관리를 위해 간헐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경루가 있는 경우

8

비노생식계 질환

○ 진단서 발급

- 진단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해당 질병

- 신장질환, 요로질환, 방광질환, 전립선질환, 생식기질환 등

○ 평가방법

- 질병의 급·만성도,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투석여부,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일상 활동의 제약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비노생식 질환이 의심이 되는 경우 -비노생식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비노생식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인 경우 -비노생식 질환으로 치료하였고, 현재 안정적인 경우 -비노생식 질환으로 정도의 증상이 있는 경우
2단계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경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61-90 ml/분) 되어 있는 경우 -비노생식 질환에 대한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변검사상 이상소견으로 추적이 필요한 경우 -비노생식 질환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3단계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중증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31-60 ml/분)되어 있는 경우 -한쪽 신장만 기능적인 경우 -진행성 비노생식 질환으로 주기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비노생식 질환으로 치료 중이나 일상생활(식사, 배뇨, 청결유지, 거동, 약물복용 등의 기본적인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 -배뇨를 위해 간헐적인 도뇨관이 필요한 경우(상부요로의 해부학적, 기능적 변화 없음)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
4단계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고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15-30 ml/분) 되어 있는 경우 -신장기능 저하로 일시적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경우 -요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도뇨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배뇨를 위해 간헐적인 도뇨관이 필요한 경우(상부요로의 해부학적, 기능적 변화 있음)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이나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

9 내분비계 질환

- 진단서 발급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해당 질병
 - 갑상선, 당뇨병
- 평가방법
 - 수술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수술 및 회복 기간 동안은 근로능력이 없음
 - 갑상선 약물 복용을 해야 하는 경우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1단계 해당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경구 복용약이나 인슐린 투여로 관리되는 경우
2단계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당뇨약을 3가지 이상 경구투여 해야 하며, 확실한 식이요법이 필요한 경우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인슐린과 경구용 약을 병행하고 확실한 식이요법이 필요한 경우
3단계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경구약과 인슐린 치료 등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잘 안되고, 적극적인 식이요법이 필요한 경우
4단계	-해당 없음

10 혈액 및 중앙질환계 질환

- 진단서 발급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해당 질병
 - 민혈, 백혈구 감소, 혈소관 이상, 혈액응고 이상, 골수 이상,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종양 등
- 평가방법
 - 질병의 급·만성 여부,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혈구이상에 따른 심기능, 전신 증상여부, 질병 중증도에 따른 일상 활동의 제약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혈액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혈액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혈액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인 경우 -종양치료를 완료한 상태로 특별한 치료 없이 부정기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2단계	-민혈이 진단되었으나 증상은 거의 없는 경우 -혈액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약물복용이 요하나,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미미한 경우 -명이 잘 드는 경우 -종양치료가 완료된 상태로 정기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3단계	-혈액질환이 치료되었으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혈액질환으로 경도의 증상(어지러움, 피로)이 있는 경우 -명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월마다 일반혈액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진행성 혈액질환으로 주기적인 정밀 검사(골수검사 등)가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 중인 혈액질환으로 치료 중단시 질병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혈소판 감소, 응고이상으로 인해 명이 잘 드는 경우 -혈액암이 관해상태로 주기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골수이식을 받은 상태 -종양치료가 완료되었으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상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3개월 간격의 동원가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종양이 관해상태로 주기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혈도 활동 중에 숨이 차는 경우 -만성적인 백혈구 감소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 -혈소판 감소, 용고이상으로 인해 진전에 명이 있는 경우 -혈액임이나 골수이상으로 화학요법 중인 경우 -중양치료(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중이거나 수술 후 상태로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가 끝난 경우 -중양이 재발한 경우 -골수이식을 받은 상태이나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
-----	--

11 피부질환계 질환

- 진단서 발급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피부질환>

○ 해당 질병

- 피부의 기능적 장애를 동반하는 선천성 또는 유전성 피부질환
(예) 색소성 건피증(xeroderma pigmentosum), 백피증(albinism), 어린선(ichthyosis)
- 후천성으로 난치성 또는 진행성인 피부 질병

(예) 중독성 표피용해증(TTEN), 전신성 경피증(systemic sclerosis), 천포창(perniphigus)

○ 평가방법

- 각각의 질환 별로 피부과 전문의의 육안진단(전형적인 소견으로 교과서의 임상진단 기준에 맞아야 함), 첩포검사(폐치 검사), 유발 검사, 병리조직검사, 알레르기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소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징후 및 증상의 정도는 지속기간, 이환범위,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한다.
- 아래 4개의 기준 중 평가 결과 각각 단계가 다를 경우 '일상생활 수행 및 노동수행의 제한 정도'의 단계로 평가한다.

○ 평가표

단 계	징후 및 증상 정도	일상생활 수행 및 노동수행의 제한 정도	치료의 필요성	공간적 제한여부
1단계	가끔 나타남	제한이 없거나 특장상황에서 가끔 나타남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정기적인 관찰필요	공간적 제한 없음
2단계	가끔 나타남	가려움 등의 증상으로 일부 제한이 있음	약물치료 등 간헐적인 치료 필요함	제한 없음
3단계	가끔 나타남	가려움과 외용제 도포 등으로 상당부분 제한이 있음	정기적인 약물 및 외래 치료가 필요함	제한 없음
4단계	주기적으로 나타남	많은 제한이 있음	정기적인 약물 및 외래 치료가 필요함	외부활동 등의 제한이 필요함

<외모 및 결손질환>

- 해당 질병
- 일상 활동(ADL)에는 지장이 없으나 선천 기형, 유전, 질병, 화상, 사고 등으로 인한 피부의 구조적 증상이 적절한 치료나 처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개선 될 여지가 없이 고착된 상흔(흉터)을 위시하여 피부의 색조 이상, 국소적 추형

(예) 켈로이드(Keloid), 신경섬유종(Neurofibromatosis), 반흔(Scar)

○ 평가방법

- 외모는 신체에서 평상의 의복으로 가려있지 않고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며 안면부와 팔꿈치 이하, 무릎 관절 이하로 정의한다.
- 추흔은 색조의 뚜렷한 변화나 함몰, 융기를 동반하거나 또는 켈로이드성의 흉터로 '보기 흉한 흉터'로 정의한다.
- 병변의 크기(면적)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 평가표

단계	노출된 안면부 또는 팔다리의 흉터 또는 색조변색	노출된 안면부 또는 팔다리의 추흔	코의 결손	귀, 눈꺼풀의 결손
1단계	7% 이상	7.5% 미만	1/4 미만	한쪽 귀 대부분의 결손
2단계	15% 이상	7.5% 이상	1/4 이상	양쪽 귀 대부분의 결손 한쪽 눈꺼풀의 뚜렷한 결손
3단계	30% 이상	15% 이상	1/3 이상	양쪽 눈꺼풀 대부분의 결손
4단계	60% 이상	30% 이상	2/3 이상	

[별표 2]

활동능력 평가기준(제10조 제4항 관련)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별 제26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활동능력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3. 평가항목

항 목	정 의
1. 체력 (간이 평가항목)	물건을 들어 올리고, 밀고, 당기고, 운반할 수 있는 능력
2. 만성적 증상 (간이 평가항목)	통증, 부동,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이 만성화된 상태
3. 알코올의존 (간이 평가항목)	알코올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
4. 취업가능성	노동시장에서 취업될 가능성
5. 자기관리	원활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견상으로 자기관리를 하는 능력
6. 집중력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는 능력
7. 근로의욕	일을 하려는 의지 또는 일에 대한 열의
8. 자기통제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항 목	정 의
9. 대인관계	관리자,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10. 이해력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11. 기초학습 활용능력	기초학습 능력(사칙연산, 쓰기, 읽기)을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
12. 공간 지각력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다른 대상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어디에 있는지(방향) 파악할 수 있는 능력
13. 습득력	작업의 방법을 빨리 터득할 수 있는 능력
14. 대처능력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15. 동시업무 수행능력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

4. 평가방법

가. 평가는 간이평가 → 전체 평가 순으로 하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면접평가 → 관찰평가 → 상황평가 순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평 가 방 법
면접평가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대상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관찰평가	평가대상자의 행동, 말투, 태도 등을 관찰을 통해 평가
상황평가	초기 상담과정에서 이미 획득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얻은 주거현황, 건강상태, 가족과의 관계 등 상황정보에 근거하여 평가

5. 평가척도

가. 각 평가항목은 0점에서 4점 중 하나의 점수를 부여

나.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은 1차적으로 점수별로 형성하고 있는 기준을 우선 적용
다.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침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적용

제2장 활동능력 평가 항목별 기준

문항	항목	정의	평가 기준	점수
1	체 령 (간이평가 항목)	물건을 들어 올리고, 밀고, 당기고, 운반할 수 있는 능력	유체 노동은 불가능하다	0
			유체 노동은 어렵다	1
			낮은 강도의 유체 노동이 가능하다	2
			중간 강도의 유체 노동이 가능하다	3
2	만성적 증상 (간이평가 항목)	통증, 부동,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이 만성화된 상태	높은 강도의 유체 노동이 가능하다	4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고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0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나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1
			증상이 간혹 보이거나 일상생활이 크게 어려움이 없다	2
3	일코을 의 준 (간이평가 항목)	일코을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4
			일코을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	0
			일코을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1
			일코을로 인한 문제가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2
4	취 업 가능성	노동시장에서 취업될 가능성	일코을로 인한 문제가 약간 있다	3
			일코을로 인한 문제가 없다	4
			56세 이상이고, 고교 중퇴 이하이다	0
			56세 이상이고, 고졸 이상이다	1
55세 이하이고, 고졸 중퇴 이하이다	55세 이하이고, 고졸 이상이다	55세 이하이고, 고졸 이상이다	55세 이하이고, 고졸 중퇴 이하이다	2
			55세 이하이고, 고졸 이상이다	3
			55세 이하이고, 전문대졸 이상이다	4

문항	항목	정의	평가 기준	점수
5	자기 관리	원활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견상으로 자기관리를 하는 능력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0
			취업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1
			자기 관리에 신경쓰지 않는다	2
			자기 관리가 약간 서툴다	3
6	집중력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는 능력	자기 관리를 잘하고 옷을 단정히 입는다	4
			매우 낮은 편이다	0
			낮은 편이다	1
			보통 수준이다	2
			높은 편이다	3
			매우 높다	4
7	근로 의욕	일을 하려는 의지 또는 일에 대한 열의	최근 3년내 일한 경험이 거의 없다	0
			일을 하려는 의욕이 강하다	1
			일을 하려는 의욕이 있다	2
			일을 하려는 의욕이 강한 편이다	3
8	자기 통제	기본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하려는 의욕이 매우 강하다	4
			자기 통제가 안된다	0
			자기 통제가 안되는 편이다	1
			보통이다	2
			자기 통제가 잘 된다	3
			자기 통제가 잘 된다	4
9	대인 관계	관리자,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대인관계로 인해 갈등과 불화(싸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0
			대인관계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1
			별다른 교류가 없다	2
			행식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3
			대인관계가 좋다	4

문항	항목	정의	평가 기준	점수
10	이해력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지속적으로 설명해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0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듣는 것과 다른 내용으로 반응한다	1
			집중해서 듣기는 하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2
			업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해한다	3
11	기초 학습 활용 능력	기초학습 능력(사칙연산, 읽기, 쓰기)을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업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4
			사칙연산, 읽기, 쓰기가 거의 어렵다	0
			사칙연산, 읽기, 쓰기 중 1개만 가능하다	1
			사칙연산, 읽기, 쓰기 중 2개만 가능하다	2
			사칙연산, 읽기, 쓰기는 가능하나 다소 수준이 낮다	3
			사칙연산, 읽기, 쓰기에 문제가 없다	4
12	공간 지각력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다른 대상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어디에 있는지(방향)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동행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0
			갔던 곳도 못찾고, 세 강소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1
			여러번 확인 철차 후 간신히 찾아간다	2
			간혹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3
13	습득력	작업의 방법을 빨리 터득할 수 있는 능력	공간 지각력에 문제가 없다	4
			작업도구 사용법을 반복교육해도 사용하지 못한다	0
			많은 반복학습을 하면 겨우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	1
			간단한 도구는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다	2
			복잡한 도구 사용법 습득에 시간이 필요하다	3
			복잡한 도구 사용법도 단시일내에 습득할 수 있다	4

문항	항목	정의	평가 기준	점수
14	대체 능력	문제를 인식하고 해 결하는 능력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0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나 대체하지 않는다	1
			문제에 대해 인식은 하나 서둘러 처리 한다	2
			문제를 인식하나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3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4
15	동시 업무 수행 능력	여러 가지 일을 동 시에 수행할 수 있 는 능력	하나도 제대로 끝까지 일을 하지 못한다	0
			순차적인 일처리만 가능하다	1
			1~2가지 일은 동시에 하나 버거워한다	2
			1~2가지 정도의 일은 동시에 할 수 있다	3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를 적기에 수행 할 수 있다	4